

제 호

재외교육기관(재외교육단체) 등록증

1. 목 적:
2. 명 칭:
3. 설 치 자:
4. 위 치:

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()대사(총영사) [인]

주: 1. 이 증서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할 공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.
2. 위의 교육기관(또는 재외교육단체)의 명칭·위치 등을 변경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공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 (120g/m²)